

## 5. 建築士法 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交通部令 第16號 1995. 5. 26

건축사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2중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제1호중 “1만 7천원”을 “2만 5천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1항중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제26조 제1항·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3호중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중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동서식의 수수료란중 “17,000원”을 “25,000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의 표지중 “건설부”를

“건설교통부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 서식,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지뒷면 및 제3면, 별지 제11호 서식의 앞면,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앞면, 별지 제31호 서식, 별지 제32호 서식의 표지뒷면 및 제3면과 별지 제33호 서식의 앞면중 “건설부장관”을 각각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지, 별지 제11호 서식의 뒷면, 별지 제11호의 2 서식의 뒷면, 별지 제12호 서식의 뒷면, 별지 제32호 서식의 표지 및 별지 제33호 서식의 뒷면중 “건설부”를 각각 “건설교통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골자◇

물가변동등 사회·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1만 7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.

〈건설교통부 제공〉

**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**